|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호  비거주기업의 중국거주기업 주식 등 재산의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칭함) 및 그 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라 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관법이라 칭함)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비거주기업이 합리적 상업목적이 없는 계획을 실시함을 통하여 중국거주기업의 주식 등 재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하여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시 해당 간접양도거래의 성질을 규명하여 중국거주기업의 주식 등 재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중국 거주기업의 주식 등 재산은 비거주기업이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그리고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이 중국 세법 규정에 따르고,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중국 경내 기구 및 장소의 재산, 중국 경내 부동산, 중국에 있는 거주기업의 권익성 투자자산 등(이하 중국과세대상재산이라 칭함)을 가리킨다.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는 비거주기업이 중국 과세대상재산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외기업(경외 등록 중국 거주기업을 불포함, 이하 경외기업이라 칭함)의 주식 및 기타 유사 권익(이하 주식이라 칭함)을 양도하는 것을 통하여, 중국과세대상재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과 서로 동일한 혹은 비슷한 실질결과를 발생하는 거래를 가리키며, 비거주기업의 재조직이 경외기업 주주의 변동을 일으키는 정황을 포함한다. 중국과세대상재산을 간접양도하는 비거주기업은 주식양도자라 칭한다.  2. 본 공고 제1조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양도자가 취득한 양도 경외기업 주식소득은 중국과세대상재산의 수액에 귀속되며(이하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이라 칭함), 이하 절차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  (1) 경외기업에 속하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는 산하기업이 중국 경내 설치한 기구 및 장소 재산의 수액(이하 간접양도기구 및 장소의 재산소득이라 칭함)은 설치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소득이라 간주하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의 정황 이외 중국경내 부동산에 속하는 수액(이하 간접양도 부동산 소득이라 칭함)에 대하여 중국 경내 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본 조 제(1)항 혹은 (2)항 규정의 정황 이외 중국 거주기업의 권익성 투자자산에 속하는 수액(이하 간접 양도 주식 소득이라 칭함)에 대하여 중국 경내 원천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 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합리적 상업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거래의 간접양도와 관련있는 모든 계획 준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상황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하 관련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1) 경외기업의 주식의 주요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에서 발생된 것인지 여부  (2) 경외기업자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 경내에 있는 투자로 구성된 것인 지 여부, 혹은 그 취득한 수입이 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 경내에서 발생된 것인 지 여부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는 산하기업이 이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이 기업구조가 경제실질을 갖추고 있는 지를 실증할 수 있는 지 여부  (4) 경외기업의 주주 및 업무형식 및 관련 조직구조의 존속시간  (5) 중국과세대상 간접양도 거래의 경외 소득세 과세납부 정황  (6) 주식양도자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투자 및 간접양도와 중국과세대상재산거래 간접투자 및 간접양도의 대체가능성  (7)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의 중국에서의 적용가능한 세수협정 혹은 계획 정황  (8) 기타 관련 요소  4. 본 공고 제5조와 제6조 규정 정황 이외 중국과세대산 재산의 간접양도와 관련된 전체 안배가 동시에 이하 정황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공고 제3조에 따라 분석과 판단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 상업목적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경외기업의 주식의 75%이상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에서 나온 경우  (2)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 발생 전 1년내 어떠한 시점에 경외기업자산총액(현금을 불포함)의 90%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경내의 투자로 구성되었거나 혹은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 발생전 1년내 경외기업의 취득수입의 90%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경우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기업이 소재 국가(지역)에서 등기등록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조직형식을 만족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경제적 실질을 갖추었음을 실증하는 데 부족한 경우  (4)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가 경외에서의 소득세 납부 부담이 중국과세대상재산의 직접양도 거래의 중국에서의 세금부담보다 낮은 경우  5.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와 관련된 전체 계획이 이하 정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기업은 공개시장에서 동일한 상장 경외기업 주식을 매입후 매각하여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소득을 취득한 경우  (2) 비거주기업이 직접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한 후 양도한 정황에서 적용가능한 세수협정 혹은 계획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양도소득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6. 중국과세대상재산을 간접양도함과 동시에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합리적 상업목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1) 거래 쌍방의 주식관계가 아래 정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1) 주식양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식양수자의 8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주식양수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식양도자의 8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주식양도자와 주식양수자가 같은 당사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이상의 주식을 소유당하고 있는 경우  경외기업주식의 50%이상(50% 불포함)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 부동산에서 나온 경우, 본 조 제(1)항 제1), 2), 3)목의 주식보유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상술한 간접 보유한 주식은 주식보유 연결고리 중 각 기업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곱하여 계산한다.  (2) 본 간접양도거래 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간접양도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 간접양도거래의 정황하에서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간접양도거래를 비교하여 그 중국소득세의 부담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주식양도자가 본 기업 혹은 그와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주식(상장기업주식을 불포함)으로 주식거래대가를 지불한다.  7. 간접양도기구 및 장소 재산소득에 대해 본 공고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납세소득발생일 납세연도에 속하는 해당 기구 및 장소의 소득에 계상하여야 하며, 유관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 간접양도부동산소득 혹은 간접양도주식소득에 대해 본 공고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유관법률규정 혹은 계약약정에 따라 주식양도자에 대해 직접 관련 조항의무를 부담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혹은 미지급세금을 정액에 달하도록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7일내 주관세무기관에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식양도자 수익과 세액 계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세금입고후 30일 내 세무총국에 비안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주식양도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주식양도계약 혹은 협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본 공고 제9조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경우 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다.  9.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쌍방 및 주식이 간접양도된 중국거주기업은 주관세무기관에 주식양도사항을 보고할 수 있고 이하 자료를 제공한다.  (1) 주식양도계약 혹은 협의(외국문서는 동시에 중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동일)  (2) 주식양도 전후의 기업주식구조도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기업의 2개년도 재무 및 회계 보고표  (4)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거래가 본 공고 제1조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10.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 쌍방과 기획자 및 주식 간접양도 대상이 된 중국주민기업은 주관세무기관요구에 따라 이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본 공고 제9조 규정의 자료(이미 제공한 것은 제외)  (2) 유관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거래 전체 계획 혹은 집행과정 정보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는 산하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재무, 재산 등 방면의 정보 및 내부회계 정황  (4) 경외 주식양도 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자산평가보고 및 기타 가액 근거  (5)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의 경외 소득세 납부의무 정황  (6) 공고 제5조와 제6조의 적용과 관련된 증거정보  (7) 기타 관련 자료  11. 주관세무기관이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에 대해 입안조사 및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일반 조세회피방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2. 주식양도자는 동일한 경외기업주식의 직접양도를 통하여 2개 항목이상의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를 야기한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2개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주식양도자는 각자 주 세무기관에서 기업소득세 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각 주관세무기관은 서로 세금계산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일치된 의견을 얻은 후 세금입고를 계획하며, 만약 일치된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공동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 주식양도자가 기한에 맞추어 혹은 액수에 맞추어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소득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 이외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1, 122조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자에 대하여 일수에 따라 이자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자가 경외기업 주식양도 계약 혹은 협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본 공고 제9조규정의 자료를 제출 혹은 본 공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2조 규정의 기준이율 계산이자에 따르며,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 혹은 납부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이율에 따라 5%의 이자를 계산한다.  14. 본 공고는 중국경내 미설립기구 및 장소의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 및 비거주기업이 기구와 장소가 설립되었지만 비거주기업이 설립된 기구와 장소가 서로 실질적 관계가 없는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식양도자가 경외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를 포함)이 설립된 경내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 공고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관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15. 본 공고에서 말하는 납세의무발생일은 주식양도계약 혹은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외기업의 주식변경완성일을 가리킨다.  16. 본 공고에서 말하는 주관세무기관은 중국과세대상재산이 비거주기업이 직접적으로 보유된 후 양도된 정황하에서 재산양도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관세무기관을 가리키며, 본 공고 제2조 규정의 3가지 정황에 따라 확정된다.  17. 본 공고에서 말하는 이상은 특별 언급이외 모든 본수를 포함한다.  18. 본 공고규정과 세수협정이 불일치 하는 경우 세수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 발표전 발생하였으나 세무처리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주식양도소득 기업소득세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함 [2009]698호) 제5조, 제6조 및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기업소득세 관리 약간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4호) 제6조 제(3), (4), (5)항 관련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2월3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非居民企业间接转让财产企业所得税若干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号  　　为进一步规范和加强非居民企业间接转让中国居民企业股权等财产的企业所得税管理，依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以下称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以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现就有关问题公告如下：  　　一、非居民企业通过实施不具有合理商业目的的安排，间接转让中国居民企业股权等财产，规避企业所得税纳税义务的，应按照企业所得税法第四十七条的规定，重新定性该间接转让交易，确认为直接转让中国居民企业股权等财产。  　　本公告所称中国居民企业股权等财产，是指非居民企业直接持有，且转让取得的所得按照中国税法规定，应在中国缴纳企业所得税的中国境内机构、场所财产，中国境内不动产，在中国居民企业的权益性投资资产等（以下称中国应税财产）。  　　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是指非居民企业通过转让直接或间接持有中国应税财产的境外企业（不含境外注册中国居民企业，以下称境外企业）股权及其他类似权益（以下称股权），产生与直接转让中国应税财产相同或相近实质结果的交易，包括非居民企业重组引起境外企业股东发生变化的情形。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的非居民企业称股权转让方。  　　二、适用本公告第一条规定的股权转让方取得的转让境外企业股权所得归属于中国应税财产的数额（以下称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应按以下顺序进行税务处理：  　　（一）对归属于境外企业及直接或间接持有中国应税财产的下属企业在中国境内所设机构、场所财产的数额（以下称间接转让机构、场所财产所得），应作为与所设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所得，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条第二款规定征税；  　　（二）除适用本条第（一）项规定情形外，对归属于中国境内不动产的数额（以下称间接转让不动产所得），应作为来源于中国境内的不动产转让所得，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条第三款规定征税；  　　（三）除适用本条第（一）项或第（二）项规定情形外，对归属于在中国居民企业的权益性投资资产的数额（以下称间接转让股权所得），应作为来源于中国境内的权益性投资资产转让所得，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条第三款规定征税。  　　三、判断合理商业目的，应整体考虑与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相关的所有安排，结合实际情况综合分析以下相关因素：  　　（一）境外企业股权主要价值是否直接或间接来自于中国应税财产；  　　（二）境外企业资产是否主要由直接或间接在中国境内的投资构成，或其取得的收入是否主要直接或间接来源于中国境内；  　　（三）境外企业及直接或间接持有中国应税财产的下属企业实际履行的功能和承担的风险是否能够证实企业架构具有经济实质；  　　（四）境外企业股东、业务模式及相关组织架构的存续时间；  　　（五）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在境外应缴纳所得税情况；  　　（六）股权转让方间接投资、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与直接投资、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的可替代性；  　　（七）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在中国可适用的税收协定或安排情况；  　　（八）其他相关因素。  　　四、除本公告第五条和第六条规定情形外，与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相关的整体安排同时符合以下情形的，无需按本公告第三条进行分析和判断，应直接认定为不具有合理商业目的：  　　（一）境外企业股权75%以上价值直接或间接来自于中国应税财产；  　　（二）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发生前一年内任一时点，境外企业资产总额（不含现金）的90%以上直接或间接由在中国境内的投资构成，或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发生前一年内，境外企业取得收入的90%以上直接或间接来源于中国境内；  　　（三）境外企业及直接或间接持有中国应税财产的下属企业虽在所在国家（地区）登记注册，以满足法律所要求的组织形式，但实际履行的功能及承担的风险有限，不足以证实其具有经济实质；  　　（四）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在境外应缴所得税税负低于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在中国的可能税负。  　　五、与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相关的整体安排符合以下情形之一的，不适用本公告第一条的规定：  　　（一）非居民企业在公开市场买入并卖出同一上市境外企业股权取得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  　　（二）在非居民企业直接持有并转让中国应税财产的情况下，按照可适用的税收协定或安排的规定，该项财产转让所得在中国可以免予缴纳企业所得税。  　　六、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同时符合以下条件的，应认定为具有合理商业目的：  　　（一）交易双方的股权关系具有下列情形之一：  　　1. 股权转让方直接或间接拥有股权受让方80%以上的股权；  　　2. 股权受让方直接或间接拥有股权转让方80%以上的股权；  　　3. 股权转让方和股权受让方被同一方直接或间接拥有80%以上的股权。  　　境外企业股权50%以上（不含50%）价值直接或间接来自于中国境内不动产的，本条第（一）项第1、2、3目的持股比例应为100%。  　　上述间接拥有的股权按照持股链中各企业的持股比例乘积计算。  　　（二）本次间接转让交易后可能再次发生的间接转让交易相比在未发生本次间接转让交易情况下的相同或类似间接转让交易，其中国所得税负担不会减少。  　　（三）股权受让方全部以本企业或与其具有控股关系的企业的股权（不含上市企业股权）支付股权交易对价。  　　七、间接转让机构、场所财产所得按照本公告规定应缴纳企业所得税的，应计入纳税义务发生之日所属纳税年度该机构、场所的所得，按照有关规定申报缴纳企业所得税。  　　八、间接转让不动产所得或间接转让股权所得按照本公告规定应缴纳企业所得税的，依照有关法律规定或者合同约定对股权转让方直接负有支付相关款项义务的单位或者个人为扣缴义务人。  　　扣缴义务人未扣缴或未足额扣缴应纳税款的，股权转让方应自纳税义务发生之日起7日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税款，并提供与计算股权转让收益和税款相关的资料。主管税务机关应在税款入库后30日内层报税务总局备案。  　　扣缴义务人未扣缴，且股权转让方未缴纳应纳税款的，主管税务机关可以按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相关规定追究扣缴义务人责任；但扣缴义务人已在签订股权转让合同或协议之日起30日内按本公告第九条规定提交资料的，可以减轻或免除责任。  　　九、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的交易双方及被间接转让股权的中国居民企业可以向主管税务机关报告股权转让事项，并提交以下资料：  　　（一）股权转让合同或协议（为外文文本的需同时附送中文译本，下同）；  （二）股权转让前后的企业股权架构图；  （三）境外企业及直接或间接持有中国应税财产的下属企业上两个年度财务、会计报表；  　　（四）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不适用本公告第一条的理由。  　　十、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的交易双方和筹划方，以及被间接转让股权的中国居民企业，应按照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以下资料：  　　（一）本公告第九条规定的资料（已提交的除外）；  　　（二）有关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整体安排的决策或执行过程信息；  　　（三）境外企业及直接或间接持有中国应税财产的下属企业在生产经营、人员、账务、财产等方面的信息，以及内外部审计情况；  　　（四）用以确定境外股权转让价款的资产评估报告及其他作价依据；  　　（五）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在境外应缴纳所得税情况；  　　（六）与适用公告第五条和第六条有关的证据信息；  　　（七）其他相关资料。  　　十一、主管税务机关需对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交易进行立案调查及调整的，应按照一般反避税的相关规定执行。  　　十二、股权转让方通过直接转让同一境外企业股权导致间接转让两项以上中国应税财产，按照本公告的规定应予征税，涉及两个以上主管税务机关的，股权转让方应分别到各所涉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企业所得税。  　　各主管税务机关应相互告知税款计算方法，取得一致意见后组织税款入库；如不能取得一致意见的，应报其共同上一级税务机关协调。  　　十三、股权转让方未按期或未足额申报缴纳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应纳税款，扣缴义务人也未扣缴税款的，除追缴应纳税款外，还应按照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一百二十一、一百二十二条规定对股权转让方按日加收利息。  　　股权转让方自签订境外企业股权转让合同或协议之日起30日内提供本公告第九条规定的资料或按照本公告第七条、第八条的规定申报缴纳税款的，按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一百二十二条规定的基准利率计算利息；未按规定提供资料或申报缴纳税款的，按基准利率加5个百分点计算利息。  　　十四、本公告适用于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的非居民企业取得的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以及非居民企业虽设立机构、场所但取得与其所设机构、场所没有实际联系的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  　　股权转让方转让境外企业股权取得的所得（含间接转让中国应税财产所得）与其所设境内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无须适用本公告规定，应直接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条第二款规定征税。  　　十五、本公告所称纳税义务发生之日是指股权转让合同或协议生效，且境外企业完成股权变更之日。  　　十六、本公告所称的主管税务机关，是指在中国应税财产被非居民企业直接持有并转让的情况下，财产转让所得应纳企业所得税税款的主管税务机关，应分别按照本公告第二条规定的三种情形确定。  　　十七、本公告所称“以上”除有特别标明外均含本数。  　　十八、本公告规定与税收协定不一致的，按照税收协定办理。  　　十九、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本公告发布前发生但未作税务处理的事项，依据本公告执行。《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非居民企业股权转让所得企业所得税管理的通知》（国税函〔2009〕698号）第五条、第六条及《国家税务总局关于非居民企业所得税管理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4号）第六条第（三）、（四）、（五）项有关内容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2月3日 |